DOI :http://dx.doi.org/10.52663/kcsr.2022.27.4.119

학문체계의 부패로서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

- 독일연구단체(DFG)의 규제체계를 참고하여 -

The Similarity and Duplication of Research Proposals as Corruption in the Academic System

- Referring to the regulatory system of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

양 천 수(Yang, Chun Soo)**

ABSTRACT

Science aims to discover or produce truth. Accordingly, researchers participating in the academic system must contribute to discovering or producing the truth. For this reason, the research integrity and research ethics are required of researchers. On the other hand, as the research ethics is strengthened in the academic system, the research application stage, that is, the stage of writing a research proposal, is also included in the regulatory domain of the research ethics. The plagiarism or duplication of research proposals is pointed out as one of new research misconducts. However, it is not an easy matter to regulate plagiarism or duplication of research proposals with what targets, with what standards, and with what procedures. This article examines the similarity and duplication of research proposals in this critical context. In particular, by examining the regulatory system of the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this article seeks some useful insights. According to this, the research ethics is applied throughout the life cycle of research. Therefore, the research ethics is also applied to the process of preparing and applying for a research proposal to receive research support. Accordingly, researchers must ensure that their research proposal does not get caught up in the problem of its similarity or duplication.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research ethics is still in the process of being formed, it is necessary to think more about how to deal with the duplication problem of research proposals.

Key words: research ethics, research misconduct, similarity and duplication of research proposals, plagiarism, corruption of the academic system,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 이 논문은 필자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연구사업 유사도·중복성 평가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부산대 산학협력단, 2022)에서 필자가 집필한 부분을 대폭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Ⅰ. 서론

학문은 진리를 발견 또는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이에 따라 학문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진리를 발견 또는 생산하기 위해 매진한다. 그 진리가 어떤 점에서 사회에 유용한지는 일차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진리 그 자체를 발견 또는 생산하는 것이야말로 학문체계가 추구하는 기능적 목표이기 때문이다.[2] 그러나 학문의 역사가 잘 예증하듯이 진리를 발견하고 생산한다는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는 목표 및 과정과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 이른바 학문적 부패가 발생한다. 연구 결과물의 유사, 즉 표절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3] 이 외에도 다양한 행위가 연구윤리 위반행위, 바꿔 말해 연구부정행위에 포섭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는 '자기표절'로도 지칭되는 중복게재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 중복게재가 표절처럼 연구윤리 위반행위, 달리 말해 학문적 부패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편 학문체계에서 연구윤리가 강화되면서 연구 수행 및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연구신청 단계, 더욱 정확하게 말해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도 연구윤리의 규제 영역에 포섭된다. 연구계획서의 표절이나 중복이 새로운 연구윤리 위반행위로 지목된다. 이미 한국연구재단은 연구계획서의 표절이나 중복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검증하고 규제하는 체계를 구축 및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어떤 절차로 연구계획서의 표절이나 중복 문제를 규제할 것인지는 고민해야 할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에 관한 독일연구단체의 규제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유익한 착안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학문체계의 부패로서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

1. 학문체계의 부패로서 연구부정행위

학문의 자유가 시사하듯이 오늘날 학문 영역은 독자적인 사회의 기능체계로 독립 분화되어 작동한다. 학문체계는 정치체계나 경제체계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목적을 구현해야 한다. 이는 연구자의 자유, 대학의 자치 등으로 구체화된다. 이때 학문체계는 진리의 발

1) 자연과학과 정신과학 또는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을 구별하는 방법이원론에 따르면 학문은 자연과학처럼 진리를 발견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규범적 진리를 생산하기도 한다. 방법이원론에 관해서는 하인리히 리케르트, 이상엽 (옮김), 『문화과학과 자연과학』(책세상, 2004) 참고.

2) 학문을 독자적인 사회의 기능체계로 파악하는 경우로는 N. Luhmann, *Die Wissenschaft der Gesellschaft* (Frankfurt/M., 1992) 참고.

3) 아래에서는 연구 결과나 연구계획서의 유사와 표절을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견이나 생산을 목표로 한다. 학문체계는 진리를 발견 또는 생산해야 한다.

그러나 학문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학문체계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는 여러 이유로 연구부정행위의 유혹에 빠진다. 표절이나 연구 결과 조작, 연구비 횡령 등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범하고는 한다. 무엇보다도 진리로 축적 및 체계화되는 지식이 단순히 학문적 가치이자 매체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라는 경제적 가치로 변모하고 이에 대한 권리인 지식재산권이 독자적인 권리로 제도화되면서 표절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는 권리침해 행위로, 더 나아가 범죄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연구부정행위는 학문체계의 질서를 왜곡하는 부패행위로 규정된다. 요컨대 연구부정행위는 학문체계의 부패인 것이다.[4)]

2. 연구지원에 대한 규제체계

연구윤리 위반행위 또는 연구부정행위가 학문체계의 부패로 부각되면서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노력이 학문체계 전반에 걸쳐 강화된다. 이는 연구자의 연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연구지원을 책임지는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자의 연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규제 장치를 마련 및 투입한다.[5)]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연구지원에 대한 규제체계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연구신청 및 선정 단계, 연구 수행 단계, 연구 결과 산출 단계가 그것이다.

(1) 연구신청 및 선정 단계

연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연구신청 및 선정 단계는 한국연구재단이 직접 관여한다. 연구지원 선정에 대한 판단 권한을 한국연구재단이 행사한다. 더불어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포함하는 연구신청서가 형식 요건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작업도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한다. 다만 신청된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은 해당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담당한다.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하는 업무에 공무수탁사인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심사가 이루어진다.[6)]

이 단계에서는 신청된 연구계획서가 사전에 제시된 평가 기준에 따라 지원과제로 선정될 만한 학문적 수준과 내용을 갖추었는지가 주로 판단된다. 물론 연구계획서가 연구윤리나 저작권법을 위반하는지도 평가 대상이 된다. 그렇지만 여러 여건상, 가령 데이터나 평가 시간

4) 부패 개념 전반에 관해서는 김영종, 『부패학(腐敗學): 원인과 대책』(숭실대학교 출판부, 1992) 참고.
5) 한국연구재단에 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40년사: 1977-2017: 꿈과 열정의 40년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연구재단. 1, 역사편』(2017) 참고.
6) 공무수탁사인에 관해서는 김기진,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제15권 제4호(2005. 12), 101-114쪽 참고.

의 제한 등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주로 내용면에서 볼 때 해당 연구계획서가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제시하는지, 연구자가 이에 관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에 평가의 초점을 맞추는 편이다.

(2) 연구 수행 단계

연구 수행 단계에서는 연구 수행에 관한 협약에 따라 보통 한국연구재단이 아닌 각 대학교의 산학협력단 등이 관여한다.[7] 한국연구재단이 자신의 업무를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 위탁하는 것이다.[8]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구자의 연구 수행을 규제할 것인지는 각 산학협력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각 산학협력단이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투입하는 규제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 같은 점에서 이는 일종의 절차주의 규제라 말할 수 있다.[9] 연구 수행에 대한 통제 근거는 법으로 정하되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각 산학협력단에 자율적인 형성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이다.[10]

연구를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주로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연구비가 연구 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가 규제의 초점이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연구비 횡령이나 부적정 집행 등이 주로 문제가 된다. 연구 수행 단계에서는 규제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인으로 관여하기도 한다.

(3) 연구 결과 산출 단계

연구 수행이 종료되어 연구 결과가 산출되는 단계에서는 학계, 즉 학문체계가 규제를 담당한다. 연구 결과는 논문의 형태로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이 과정에서 해당 연구 결과가 연구윤리나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가 학문체계에 의해 자율적으로 검증된다. 그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윤리 통제체계를 갖추고 있는지가 학술지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단계에서는 일종의 학문체계에 의한 자율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3. 학문체계의 부패로서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

그동안 연구윤리 위반 문제는 주로 연구 결과 산출 단계에서 문제가 되었다. 연구 결과를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는 이를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지칭한다.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는 이를 “수행 연구개발기관”으로 지칭한다.
9) 절차주의 규제에 관해서는 우선 G.-P. Calliess, Prozedurales Recht (Baden-Baden, 1999) 참고.
10)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참고.

담은 논문이 연구윤리나 저작권법에 위반되는지가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연구신청 단계에서 연구계획서의 표절이나 중복 신청과 같은 문제가 늘어나면서 이를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이자 이슈로 제기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저작권법의 측면과 연구윤리의 측면이 그것이다. 요컨대 법의 측면과 윤리의 측면에서 연구계획서의 표절 및 중복 문제가 검토된다.

4. 저작권법의 측면에서 본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

저작권법의 측면에서는 주로 연구계획서가 타인, 특히 다른 연구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가 문제된다. 달리 말해 연구계획서의 유사, 즉 표절이 문제가 된다.[11]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 기준이 주로 사용된다. 첫째는 연구계획서가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는지이다. 둘째는 연구계획서가 타인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지이다.

(1) 저작권의 의의

1) 개념

먼저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본다. 일단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뜻한다.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저작하는 주체로서 저작권자, 저작하는 행위, 저작물이 그것이다. '주체/객체/행위'라는 근대법체계의 핵심 구별을 원용하면 저작권자는 주체, 저작물은 객체, 저작행위는 행위에 대응한다.[12]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작물이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로는 시, 소설, 논문 등과 같은 언어적 저작물을 비롯하여 음악, 미술, 건축, 사진, 도형, 동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비언어적 창작물이 포함된다. 따라서 반드시 언어적 매체만이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저작물에 관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중요하다. 첫째, 특정한 매체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창작물이 외부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때 창작성이란 특정한 저작물이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은 저작물이라는 점을 뜻한다. 다만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은 특허법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고도의 창작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창작성은 외부로

11) 물론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 침해와 표절은 구별된다. 이를 지적하는 한국연구재단,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2021), 22쪽. 표절에 관해서는 이인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인용과 표절의 이해", 『윤리연구』제66호(2007. 9), 1-25쪽; 남형두, 『표절론』(현암사, 2015) 참고.

12) 주체/객체/행위 구별에 관해서는 양천수, "현대사회의 구조변혁과 법규범의 대응 방향", 『인간연구』 제46호(2022. 4), 37-75쪽 참고.

표현, 즉 '저작'되어야 한다.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13]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자는 인간 존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은 저작자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저작물을 산출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는 법적 문제로 논쟁거리가 된다.[14]

2) 두 가지 유형의 저작권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그것이다. 법이론적으로 볼 때 권리의 대상이 한편으로는 인격권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권의 성격도 지닌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는 인격적 측면과 재산적 측면이 저작물에 병존한다는 것을 뜻한다.

저작인격권으로는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을 들 수 있다. 이때 공표권이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제11조 제1항). 다음 성명표시권이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제12조 제1항). 나아가 동일성유지권이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뜻한다(제13조 제1항).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 일신전속성을 가진다(제14조 제1항).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으로 복제권(제16조), 공연권(제17조), 공중송신권(제18조), 전시권(제19조), 배포권(제20조), 대여권(제21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제22조)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제16조), 공연할 권리(제17조), 공중송신할 권리(제18조),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제19조),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제20조),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제21조),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제22조)를 저작재산권으로서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및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2)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을 뜻한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13) 이하 저작권법은 법명 없이 인용한다.

14)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양천수, "인공지능 창작물과 저작권", 『인권이론과 실천』(영남대) 제30호(2021. 12), 37-130쪽 참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등의 행위를 하고 그러한 행위가 ‘정당한 인용’ 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15]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권리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범죄가 된다.[16]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위로 표절을 언급할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저작권 침해와 표절이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표절을 기준으로 하여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 무엇을 표절로 볼 것인지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적 매체를 이용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형식적인 표현이 유사한지를 기준으로 하여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만 비언어적 매체, 가령 미술이나 음악, 영화 등의 경우에는 무엇이 표절인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1) 저작권 침해와 표절

흔히 저작권 침해와 표절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표절(剽竊) 자체가 ‘훔친다’(plagiarism)는 의미를 가지기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저작권을 이용하는 저작권 침해를 표절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데 기본적으로 큰 무리는 없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와 표절이 구별되는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표절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만 표절에는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예로는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을 표절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기는 했지만 이를 사용할 때 정확한 인용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인용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17]

그러나 저작권 침해 자체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절은 실제로는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초가 되는 표절을 쉽게 말하면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한 근거 없이 복제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형식적 판단과 실질적 판단이 그것이다.

2) 표절의 형식적 판단

언어적 매체를 이용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형식적 판단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를테면 특정한 언어적 저작물이 타인의 언어적 저작물 가운데 일부 언어적 표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용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면 이는 표절로 판단할 수 있다.[18] 예를 들

15)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제4판(홍문사, 2019), 439쪽.
16) 양천수・하민경, “저작권 침해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외법논집』제37권 제4호(2013. 11), 179-196쪽 참고.
17) 이에 관해서는 남형두, 『표절론』(현암사, 2015), 172-180쪽 참고.
18) 이하 “타인의 저작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한다.”는 표현은 인용 규칙을 지키지 않고 사용한다는

어 특정한 연구계획서가 다른 연구자의 연구저작물 가운데 일부 언어적 표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면 이는 다른 연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로 판단할 수 있다. 오늘날 주로 사용되는 표절검사시스템은 형식적 판단에 초점을 맞추어 작동한다. 특정한 저작물의 언어적 표현이 다른 저작물과 특정한 범위에서 동일한지를 측정함으로써 표절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형식적 판단에는 두 가지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비언어적 매체를 이용한 저작물에는 형식적 판단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특정한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의 표현을 그대로 복제하는 경우를 찾기 쉽지 않은 예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는 판단이 실질적 판단이다.

3) 표절의 실질적 판단

실질적 판단은 특정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물 가운데 표현을 일부 또는 전부 복제하는 경우는 없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아이디어가 표현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하여 표절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도출된 법리가 바로 '실질적 유사성'이다.[19]

실질적 유사성 법리를 원용하면 특정한 연구계획서가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이디어나 표현 면에서 타인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표절, 더 나아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관해 판례도 개별 사안을 중심으로 하여 꽤 복잡한 판례 법리를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연구계획서를 판단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지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한 기준이 형성되지는 않았다.[20]

4) 형식적 판단과 실질적 판단의 결합

이에 가능한 한 가지 방안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정량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정성적 기준을 정량화된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정한 저작물이 담고 있는 핵심 키워드를 도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21] 이는 현재 한국연구재단이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의미를 포함한다.

19)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제4판(홍문사, 2019), 441쪽 아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권영준, 『저작권 침해판단론』(박영사, 2007) 참고.

20) 이에 관한 문제의식으로는 박창현, "예비타당성조사 R&D 중복성 검토의 판단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조사 담당자의 설문 응답 기반 분석",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참고.

21) 이에 관한 연구로는 이수한, 『문헌의 문장유사도분석 모델에 관한 실증적 연구』(숭실대학교 IT정책

방식이기도 하다.

이렇게 실질적 유사성을 정량화하는 방안은 달리 형식적 판단과 실질적 판단을 결합하는 방안으로 새길 수 있다. 사실 형식적 판단과 실질적 판단이 모두 한계를 가진다면 양자를 단계적·종합적으로 사용하여 표절 및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형식적 판단을 먼저 적용하여 저작물에 표절이 있는지를 판단한 후, 형식적인 표절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표절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실질적 판단을 적용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현재 한국연구재단이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을 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형식적 판단과 실질적 판단을 단계적·종합적으로 원용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22]

(2) 연구윤리 측면의 문제

연구계획서의 표절, 달리 말해 유사성이 저작권법의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면, 연구윤리의 측면에서는 연구계획서의 중복성, 즉 중복 신청이 주로 논란이 된다.[23] 예를 들어 연구계획서가 이미 공간된 연구자 자신의 결과물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이에 어떤 규제와 제재를 가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더불어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연구계획서의 중복성을 판단할 것인지도 문제된다. 연구계획서의 표절 판단이 어려운 것처럼 이 역시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Ⅲ. 독일의 연구부정행위 규제체계

아래에서는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 문제를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어떻게 그리고 이에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 판단하는 데 시사점을 얻기 위한 일환에서 우리 법체계 및 법학에 많은 영향을 준 독일이 이에 관해 어떤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1. 개요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독자적인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다.[24] 특히 독일 학문체계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독일연구단체(Deutsche

---

경영학과 박사학위 논문)(2012. 12) 참고.

22) 이에 관해서는 아래 IV.1. 참고.

23) 연구윤리에 관해서는 이인재, “연구진실성과 연구윤리”, 『윤리교육연구』제21호(2010. 4), 269-290쪽 참고.

24) 이에 관해서는 이현복·이찬미, “연구윤리에 대한 국내외 규정과 제도비교”, 『윤리연구』제77호(2010.

Forschungsgemeinschaft: DFG)가 규제체계의 중심을 이룬다.[25] 이는 한국연구재단이 학문체계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중심 기관이 되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다만 학문체계에 대한 규제가 흔히 그렇듯이 독일도 연구부정행위에 관해서는 "학문의 자기통제와 자기의무"(Selbstkontrolle und Selbstverpflichtung der Wissenschaft)가 강조된다.[26] 이러한 기조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하는 과정에 관련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다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사후적으로 제재하기보다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에 따라 독일연구단체는 옴부즈만 제도를 마련하여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27] 아래에서는 독일연구단체가 구축한 연구부정행위 규제체계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2. 연구부정행위

(1) 근거

독일연구단체는 "학문의 진실성"(Wissenschaftliche Integrität)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좋은 연구활동을 위한 지침" 규범(Kodex "Leitlinien zur Sicherung guter wissenschaftlicher Praxis")을 제정해 운용한다.[28] 더불어 이러한 지침을 위반하여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기 위한 "연구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규정"(Verfahrensordnung zum Umgang mit wissenschaftlichem Fehlverhalten: VerfOwF)을 제정해 시행한다.[29]

---

6), 257-280쪽 참고.

25) 독일연구단체는 법적 형식의 측면에서 볼 때 민법상 단체(Verein)에 해당한다. 이에 관해서는 https://www.dfg.de/dfg_profil/gremien/index.jsp 참고(검색일자: 2022. 5. 1.). 독일연구단체에 관해서는 Julia Gantenberg, *Wissenschaftskommunikation in Forschungsverbünden: Zwischen Ansprüchen und Wirklichkeit* (Wiesbaden, 2017), S. 148 ff. 참고.

26) 이를 보여주는 https://www.dfg.de/foerderung/grundlagen_rahmenbedingungen/gwp/internationale_standards/index.html 참고(검색일자: 2022. 5. 1.).

27) 이에 관해서는 https://www.dfg.de/foerderung/grundlagen_rahmenbedingungen/gwp/ombudsman/index.html 참고(검색일자: 2022. 5. 1.).

28) 이에 관해서는 https://www.dfg.de/foerderung/grundlagen_rahmenbedingungen/gwp/index.html 참고(검색일자: 2022. 5. 1.). 연구의 진실성에 관해서는 Katrin Frisch/Felix Hagenström/Nele Reeg, Wissenschaftliche Fairness: Wissenschaft zwischen Integrität und Fehlverhalten (transcript, 2022) 참고.

29) 이에 관해서는 https://www.dfg.de/foerderung/grundlagen_rahmenbedingungen/gwp/fehlverhalten/index.html 참고(검색일자: 2022. 5. 1.).

(2) 의의

1) 개념

독일은 연구부정행위를 “Wissenschaftliches Fehlverhalten”으로 지칭한다. 이를 직역하면 ‘학문적 결함행태’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법학의 견지에서 보면 여기에서 두 가지 흥미로운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

첫째, 연구부정행위와 형법상 범죄행위를 개념적으로 구별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연구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연구‘부정’행위를 ‘Fehl’verhalten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는 범죄행위가 되는 저작권 침해행위와 연구윤리위반 행위로 취급되는 연구부정행위를 개념적으로 구별하는 우리의 규제체계와도 합치한다. 말하자면 연구부정행위의 외연을 범죄행위보다 넓게 설정하는 것이다.

둘째, 연구부정‘행위’를 독일어 ‘verhalten’으로 지칭한다는 점이다. 이는 형법학이 규정하는 범죄행위보다 그 외연이 넓다는 것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독일 형법학에서 범죄는 ‘행위’(Handlung: action)로 규정되는데 연구부정행위는 이보다 외연이 넓은 ‘행태’(또는 행동)(Verhalten: behavior)로 규정하기 때문이다.[30] 이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는 고의로 이루어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 특히 중과실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 포섭한다.

2) 유형

“연구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규정”은 연구부정행위로 세 가지를 규정한다. 첫째는 허위진술을 하는 것(Falschangaben macht)이다. 둘째는 타인의 연구성과를 정당하지 않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sich fremde wissenschaftliche Leistungen unberechtigt zu eigen macht)이다. 이른바 표절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는 다른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침해하는 것(die Forschungstätigkeit anderer beeinträchtigt)이다(VerfOwF Ⅱ.1.(1)).[31]

여기서 허위진술은 연구결과 데이터의 가공, 위조, 변조, 조작 등을 모두 포괄한다. 더불어 연구계획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이는 연구신청 단계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도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되어 독일연구단체의 규제 대상에 포섭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외에 이른바 ‘아이디어 표절’(Ideendiebstahl)도 금지되는 표절에 해당한다.

한편 “연구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규정”이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 유형에서 두 가지

30) 형법상 행위 개념에 관해서는 양천수, “법해석학을 통해 다시 바라본 사회적 행위론”, 『안암법학』 제25호(2007. 11), 481-504쪽 참고.

31) 연구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규정은 https://www.dfg.de/formulare/80_01/index.jsp에서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검색일자: 2022. 5. 2.).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다른 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침해하는 것도 연구부정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연구부정행위의 외연을 확장한다. 둘째, 자기표절이나 중복게재를 명문으로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연구부정행위의 외연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적용 주체

"연구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규정"은 다음과 같은 주체에 적용된다(VerfOwF I.). 첫째는 연구신청자이다. 둘째는 연구지원이 승인된 자이다. 셋째는 대학기관 또는 비대학기관에 의해 제기된 지원신청에 관해 학문적 책임을 지는 자이다. 넷째는 연구신청에 대한 전문평가자이다. 다섯째는 독일연구단체 관계자이다.

이를 고려하면 연구신청 단계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연구자도 "연구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독일연구단체가 마련한 절차규정은 신청이 승인되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지원을 신청하는 연구자 등에도 적용된다.

3.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절차

(1) 기본 구조 및 원칙

1) 기본 구조

"연구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규정"에 따르면 독일연구단체는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2단계 절차로 대응한다. 사전심사 절차와 공식조사 절차가 그것이다.[32] 사전심사 절차로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예비적으로 조사한 후, 그 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공식조사 절차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이러한 2단계 절차를 통해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중하게 판단하고자 한다.

2) 원칙

"연구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규정"은 연구부정행위 혐의에 관한 절차의 기본 원칙으로 '공정한 그리고 비공개의 절차 원칙'(Grundsätze eines fairen und vertraulichen

32) 이에 대한 개관으로는 https://www.dfg.de/foerderung/grundlagen_rahmenbedingungen/gwp/fehlverhalten/index.html 참고(검색일자: 2022. 5. 4.).

Verfahrens)을 채택한다(VerfOwF Ⅲ.). 여기서 다음과 같은 하부 원칙이 도출된다.

첫째는 무죄추정 원칙(Grundsatz von Unschuldvermutung)이다(VerfOwF Ⅲ.). 형사재판에서 인정되는 무죄추정 원칙이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조사하는 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인정되기 전까지 피조사자인 연구자는 무죄로 추정된다.

둘째는 익명성 원칙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피조사자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조사 절차는 익명으로 진행된다(VerfOwF Ⅲ.1.a)(4)). 오늘날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한 규범적 가치로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당연해 보인다.

(2) 사전심사 절차

1) 절차 진행

연구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 가운데 제1단계에 해당하는 사전심사(Vorprüfung) 절차는 독일연구단체 기관인 사무국(Geschäftsstelle der DFG), 그중에서도 '연구진실성부'(Stab Wissenschaftliche Integrität)가 이에 관할권을 가진다. 독일 연구단체 사무국 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발견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없이 연구진실성부에 보고해야 한다(VerfOwF Ⅲ.1.a)(1)). 이렇게 연구부정행위 혐의 제보를 받거나 인지한 경우 연구진실성부는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연구진실성부는 사전심사의 모든 단계에서 전문 평가자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VerfOwF Ⅲ.1.a)(3)).

2) 절차 중지

사전심사 절차에서 관련자의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경미한 경우로 밝혀진 때에는 조사 절차가 종료된다. 이때 연구진실성부는 절차 중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옴부즈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VerfOwF Ⅲ.1.b)(1)).

연구진실성부는 절차 중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 우선적으로 제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보자가 절차 중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2주 이내에 독일연구단체 사무국에 이의신청을 할 권리(Remonstrationsrecht)가 보장된다(VerfOwF Ⅲ.1.b)(4)).[33] 사전심사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은 관련자에게도 통지된다(VerfOwF Ⅲ.1.b)(5)).

한편 독일연구단체는 옴부즈만이나 대학기관 등에 의해 연구부정행위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절차를 연기할 수 있다(VerfOwF Ⅲ.2.(1)).

33) 이의신청을 할 권리에 관해서는 Dagmar Felix, *Das Remonstrationsrecht und seine Bedeutung für den Rechtsschutz des Beamten* (Köln, 1993) 참고.

3) 공식절차 이전

반대로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이 공식조사 절차로 이전된다(VerfOwF Ⅲ.1.c)(1)). 사건이 공식조사 절차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해당 결정에 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고지된다(VerfOwF Ⅲ.1.c)(2)). 이는 해당 절차에 관해서는 비공개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3) 공식조사 절차

1) 조사위원회

공식조차 절차는 독일연구단체에 설치된 “연구부정행위 비난 조사위원회”(Ausschuss zur Untersuchung von Vorwürfen wissenschaftlichen Fehlverhaltens)가 담당한다(VerfOwF Ⅲ.3.a)(1)). 조사위원회는 정신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생명과학, 공학 등의 학문 분야를 대변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독일연구단체 주위원회(Hauptausschuss der DFG)에 의해 4년 임기로 선임된다. 이때 임기 연장은 가능하다. 독일연구단체의 사무총장이 조사위원회 의장으로 참여한다. 다만 사무총장에게는 표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VerfOwF Ⅲ.3.a)(1)).

조사위원회는 개별 사례에서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나 표결권은 인정되지 않는 전문 평가자를 최대 2명까지 임명할 수 있다. 더불어 조사위원회는 옴부즈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VerfOwF Ⅲ.3.a)(2)).

2) 절차 진행

공식조사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VerfOwF Ⅲ.3.b)(1)). 피조사자에게는 공식조사 절차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보장된다(VerfOwF Ⅲ.3.b)(2)). 제보자의 이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는다(VerfOwF Ⅲ.3.b)(3)).

조사위원회는 자유심증주의(freie Beweiswürdigung)에 따라 혐의에 대한 증거를 평가한다(VerfOwF Ⅲ.3.b)(4)). 증거평가에 대한 형사재판의 원칙이 공식조사 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다수결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독일연구단체 주위원회에 혐의에 대한 결정 제안과 함께 조사 결과를 제출한다(VerfOwF Ⅲ.3.b)(5)).

(4) 조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권한은 조사위원회가 아닌 독일연구단체 주위원회가 가진다

(VerfOwF Ⅲ.3.c)). 조사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역할을 한다면 주위원회는 판결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주위원회는 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첫째, 조사위원회에 추가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둘째, 조사결과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VerfOwF Ⅲ.3.c)). 서면경고(schriftliche Rüge), 최대 8년까지 연구지원 신청자격 정지, 연구지원 결정 철회, 연구비 등 환수, 독일연구단체 참여 제한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최대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구지원 신청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4. 시사점

독일연구단체가 마련한 연구부정행위 규제체계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독일연구단체는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2단계의 절차를 갖추고 있다.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구현하기 위해 절차를 다단계화하는 것이다. 둘째, 연구부정행위 규제체계는 연구지원 신청자 및 신청 단계에도 적용된다. 이는 연구계획서도 연구부정행위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뜻한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흥미롭게도 중복게재나 자기표절은 규제 대상인 연구부정행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점 역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말하자면 연구신청자가 자신의 이전 결과물을 중복으로 포함하여 연구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제1단계 절차인 사전심사 절차는 독일연구단체 사무국이 직접 수행한다. 다섯째, 제2단계 절차인 공식조사 절차는 독일연구단체 산하에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행한다. 이때 조사위원회는 옴부즈만 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여섯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는 독일연구단체의 주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진다. 조사와 조치를 분리하는 이른바 탄핵주의 구조를 채택하는 것이다.

Ⅳ.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에 대한 규제 방향

독일이 보여주듯이 연구신청 단계도 연구부정행위 규제 대상에 포섭된다. 달리 말해 연구계획서의 연구윤리나 저작권법 위반도 제재된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에 우리는 어떤 규제 정책을 취해야 할까? 이에 관해 아래에서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한국연구재단이 이에 관해 어떤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어서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에 관해 어떤 규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제시한다.

1. 한국연구재단의 규제체계

한국연구재단은 2022년 현재 연구신청에 관해 크게 3단계의 규제체계를 추진한다.[34)]

(1) 제1단계

제1단계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이 확보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계획서의 중복 및 유사를 측정한다. 이때 사용하는 방식은 키워드(keyword)를 비교하는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이 도출한 키워드를 기준으로 연구계획서를 비교하여 표절률이 90% 이상이 되는 연구계획서를 검출한다. 여기서 두 가지 방식으로 연구계획서들을 비교한다. 첫째는 2012년 이후 선정된 과제의 연구계획서와 당해 연도에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비교하는 것이다. 둘째는 당해 연도에 제출된 연구계획서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2) 제2단계

키워드 비교만으로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을 판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2단계에서는 문장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계획서를 비교한다. 이때 '카피킬러'(Copy Killer)를 활용한다. 카피킬러에 의해 표절률이 40% 이상으로 판정되는 연구계획서를 검출한다. 카피킬러의 판정 대상이 되는 연구계획서는 제1단계 검사를 통해 유사 및 중복이 의심되는 연구계획서와 그 비교 대상 연구계획서들이다.

(3) 제3단계

하지만 제1단계와 제2단계 검사만으로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양적 분석 방법에 기반을 둔 검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질적 분석 방법을 원용하는 제3단계 검사가 시행된다. 제3단계에서는 각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계획서의 유사성 및 중복성을 검토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연구자에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제3단계 검사를 거쳐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이 최종 확인되면 연구신청의 예비선정이 취소된다.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윤리센터에 신고된다.

34) 한국연구재단은 이를 "유사도 및 중복성 검토 프로세스"로 지칭한다. 이에 관해서는 한국연구재단, "2022년 인문사회연구본부 학문단 통합 경상권 연구자 간담회 자료집"(2022. 11. 30) 참고.

2.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에 대한 규제 방향

(1) 한국연구재단의 규제체계 검토

한국연구재단이 구축한 규제체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우선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 여부에 대한 검사를 모두 3단계로 단계화함으로써 검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나아가 양적 분석에 기반을 둔 검사와 질적 분석에 기반을 둔 검사를 단계적으로 혼용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규제체계는 기본적으로 설득력이 높다. 따라서 연구계획서에 대한 규제체계는 이를 바탕으로 하여 보완 및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2)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 판단의 기본 원칙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객관성 원칙이다.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 판단은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판단 주체의 선입견이나 편향이 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둘째는 전문성 원칙이다. 특정한 연구계획서가 유사성이나 중복성을 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은 해당 학문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연구계획서의 연구 내용이 속하는 학문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연구계획서의 유사성이나 중복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는 설명가능성 원칙이다. 특정한 연구계획서가 유사성이나 중복성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또는 논증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는 비밀유지 원칙이다. 독일의 규제체계가 예증하듯이 특정한 연구계획서의 유사나 중복이 문제가 되는 때에는 이에 관한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한다.

다섯째는 이의 가능성 원칙이다.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 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도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자는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연구자에게는 이의에 대한 권리가 절차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여섯째는 절차적 다단계 원칙이다. 독일연구단체나 한국연구재단의 절차가 보여주듯이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을 판단하는 절차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형법학의 3단계 범죄체계론이 예증하듯이 판단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35]

35) 형법상 범죄체계론의 이러한 기능을 강조하는 경우로는 W. Hassemer, *Einführung in die*

(3)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 판단 절차

이러한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 판단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단계화하는 게 적절하다.

제1단계는 형식 판단 절차이다. 이 단계에서는 양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계획서가 다른 연구계획서와 유사한지 또는 해당 연구자의 이전 연구물과 유사한지를 판단한다. 한국연구재단이 사용하는 제1단계와 제2단계가 이에 해당한다. 양적 분석 방법이 더욱 발전하면 이 단계는 좀 더 세분화될 수 있다.

제2단계는 실질 판단 절차이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구계획서가 유사성이나 중복성을 담고 있는지 판단한다. 전문가에 의한 질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 다음과 같은 기준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연구계획서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표현을 제시하는가, 새로운 연구 방법을 사용하는가,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가, 새로운 아이디어, 해석, 방법 등이 독자적인 연구 가치를 가지는가 등이 그것이다.

제3단계는 이의 제기 및 검토 단계이다. 연구자는 원칙적으로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기에 연구계획서에 관한 혐의가 제기되는 때에는 연구자의 이의에 대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더불어 연구자의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제4단계는 최종 판단 및 제재 단계이다. 제3단계까지 절차가 진행되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계획서의 유사성이나 중복성이 최종적으로 판단된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혐의의 경중에 따라 제재가 이루어진다.

(4) 연구계획서의 중복에 대한 검토

다만 다음과 같은 문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계획서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독일의 경우가 시사하듯이 표절과 중복을 모두 동일한 의미의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36] 한때 중복게재를 '자기표절'로 규정하기도 하였지만 '자기표절' 개념 자체가 내적으로 모순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37] 한 연구자의 학문은 언제나 '제로베이스'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성취된 자신의 선행연구에 바탕을 두어 매번 조금씩 진보하는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 서양의 위대한 고전음악 작곡가들이 자신이 이미 작곡했던 음악의 모티브를 이용해 새로운 명작을 작

Grundlagen des Strafrechts (München, 1990) 참고.

36) 자기표절에 관한 문제 제기로는 정진근,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에 대한 평석",『경영법률』제29집 제2호(2019. 1), 539-577쪽 참고.

37) 자기표절의 쟁점에 관해서는 이인재, "자기표절의 쟁점",『연구윤리』제73호(2009. 6), 1-19쪽 참고.

곡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는 점이 이를 시사한다. 이를 고려하면 연구계획서의 유사성과 중복성은 기준을 달리해 평가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V. 맺음말

학문체계는 진리를 발견하고 생산하는 데서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문체계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진리를 발견하고 생산하는 데 진정성 있게 기여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에서 연구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연구윤리는 연구자가 반드시 내면화해야 하는 직업윤리이다. 연구윤리는 연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종료할 때까지, 달리 말해 연구의 생애주기 전반에 적용된다. 따라서 연구지원을 받기 위해 연구계획서를 작성 및 신청하는 과정에도 연구윤리는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계획서가 유사나 중복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윤리가 여전히 형성 중인 윤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계획서의 중복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는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권영준, 『저작권 침해판단론』(박영사, 2007).

김기진,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제15권 제4호(2005. 12).

김영종, 『부패학(腐敗學): 원인과 대책』(숭실대학교 출판부, 1992).

남형두, 『표절론』(현암사, 2015).

박창현, “예비타당성조사 R&D 중복성 검토의 판단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조사 담당자의 설문 응답 기반 분석”,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양천수, “법해석학을 통해 다시 바라본 사회적 행위론”, 『안암법학』제25호(2007. 11).

양천수, “인공지능 창작물과 저작권”, 『인권이론과 실천』(영남대) 제30호(2021. 12).

양천수, “현대사회의 구조변혁과 법규범의 대응 방향”, 『인간연구』제46호(2022. 4).

양천수・하민경, “저작권 침해죄의 정당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외법논집』제37권 제4호(2013. 11).

이수한, 『문헌의 문장유사도분석 모델에 관한 실증적 연구』(숭실대학교 IT정책경영학과 박사학위 논문)(2012. 12).

이인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인용과 표절의 이해”, 『윤리연구』제66호(2007. 9).

이인재, “자기표절의 쟁점”, 『연구윤리』제73호(2009. 6).

이인재, “연구진실성과 연구윤리”, 『윤리교육연구』제21호(2010. 4).

이현복・이찬미, “연구윤리에 대한 국내외 규정과 제도비교”, 『윤리연구』제77호(2010. 6).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제4판(홍문사, 2019).

정진근,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에 대한 평석”, 『경영법률』제29집 제2호(2019. 1).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40년사: 1977-2017: 꿈과 열정의 40년 세계로 도약하는 한국연구재단. 1, 역사편』(2017).

한국연구재단,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2021).

한국연구재단, “2022년 인문사회연구본부 학문단 통합 경상권 연구자 간담회 자료집”(2022. 11. 30).

하인리히 리케르트, 이상엽 (옮김), 『문화과학과 자연과학』(책세상, 2004).

G.-P. Calliess, *Prozedurales Recht* (Baden-Baden, 1999).

Dagmar Felix, *Das Remonstrationsrecht und seine Bedeutung für den Rechtsschutz des Beamten* (Köln, 1993).

Katrin Frisch/Felix Hagenström/Nele Reeg, *Wissenschaftliche Fairness: Wissenschaft zwischen Integrität und Fehlverhalten* (transcript, 2022).

Julia Gantenberg, *Wissenschaftskommunikation in Forschungsverbünden: Zwischen Ansprüchen und Wirklichkeit* (Wiesbaden, 2017).

W. Hassemer, *Einführung in die Grundlagen des Strafrechts* (München, 1990).

N. Luhmann, *Die Wissenschaft der Gesellschaft* (Frankfurt/M., 1992).

투고일자 : 2022. 12. 11
수정일자 : 2022. 12. 23
게재일자 : 2022. 12. 31

<국문초록>

학문체계의 부패로서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
– 독일연구단체(DFG)의 규제체계를 참고하여 –

양 천 수

학문은 진리를 발견 또는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학문체계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진리를 발견 또는 생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의 진실성과 연구윤리가 연구자에게 요청된다. 한편 학문체계에서 연구윤리가 강화되면서 연구신청 단계, 즉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도 연구윤리의 규제 영역에 포섭된다. 연구계획서의 표절이나 중복이 새로운 연구부정행위로 지목된다. 그러나 과연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어떤 절차로 연구계획서의 표절이나 중복 문제를 규제할 것인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 문제를 살펴본다. 특히 이에 관한 독일연구단체의 규제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유익한 착안점을 모색한다. 이에 따르면 연구윤리는 연구의 생애주기 전반에 적용된다. 따라서 연구지원을 받기 위해 연구계획서를 작성 및 신청하는 과정에도 연구윤리는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계획서가 유사나 중복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윤리가 여전히 형성 중인 윤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계획서의 중복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는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연구윤리, 연구부정행위, 연구계획서의 유사 및 중복, 표절, 학문체계의 부패, 독일연구단체